대구대학교 법·행정대학 교수회 규정

2022. 12. 14. 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3조,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대구대학교 법·행정대학 교수회(이하 "법·행정대 교수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법·행정대 교수회는 대구대학교 법·행정대학 소속인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한다.

제3조 (권한)

법·행정대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- 1. 교수회 회장 및 평의원 선출
- 2. 학장 후보 선출
- 3. 교수회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법·행정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4조 (임원)

- ① 법·행정대 교수회에는 회장 1인과 평의원 1인을 임원으로 둔다.
- ②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해 재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하며, 동수 득표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.
- ③ 평의원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.
- ④ 회장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.
-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없다.
- ⑥ 회장 또는 평의원 직이 궐위된 경우,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후임자를 선출하며, 보궐된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⑦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법·행정대 교수회 사무를 총괄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며, 전체교수회에서는 평의원이 된다.
- ⑧ 회장과 평의원은 대구대학교 교수회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한을 행사한다.
- ⑨ 회장 또는 평의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법률이나 학칙을 위반하였을 시는 총회에서 불신임 또는 소환을 결의할 수 있다.

제5조 (총회)

- ① 법·행정대 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, 학장이 요청할 때,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회장이 소집한다.
- ④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실제 출석회원(이하 "참석회원"이라 한다)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출석 위임장은 재적회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- ⑤ 개회 이후라도 참석회원 수가 재적회원의 4분의 1 미만이 되면 자동 유회된다.
- ⑥ 재적회원 수에 휴직 중인 회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학장후보 선거)

- ① 학장후보는 현임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학기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학장후보 선거의 관리는 법·행정대 교수회 임원진이 담당한다.
- ③ 학장후보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의 법·행정대 교수회 회원 전원이 가지나, 선거장소에 출석했을 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학장후보 피선거권은 법·행정대 교수회 회원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갖는다.
- ⑤ 학장후보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,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시 당선자로 한다.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,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, 동수 득표일 경우에는 연장자(일자 포함)를 당선자로 한다.
- ⑥ 법·행정대 교수회장은 선거일 익일까지 선거결과 및 당선자를 공고하고, 선출된 학장 후보를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학장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궐위된 경우, 잔여임기 동안의 후임자를 조속히 선출한다.

제7조 (규정의 개정)

- ① 이 규정의 개정은 2개 이상 학과의 회원 7인 이상, 또는 임원진의 발의로 제안된다.
- ② 규정 개정안의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(2022.12.14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